－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－

專門委員 檢討報告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6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6월 5일

□ 제안 이유

○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관련 조문변경, 공동시설세 납기변경,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정비 등 관련조문을 지방세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.

□ 주요 내용

○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었던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(안 제11조)

○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 추가(안 제19조 및 안 제24조)

○ 공동시설세 납기를 변경(안 제60조)

-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징수 근거규정 마련

  • 변경전 : 7. 16일 ~ 7. 31일, 9. 16일 ~9. 30일

  • 변경후 : 7. 16일 ~ 7. 31일

○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규정 정비
(안 제74조 및 안 제75조)

- 납세의무자변경
  - 변경전 :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
  - 변경후 :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
- 세　　율 : 1,000분의 2 → 1,000분의 5

□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승마회원권의 취득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, 주택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현행 7월과 9월 납기인 공동시설세 납기를 7월 납부로 간소화하는 한편,
-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을 현행 1,000분의 2에서 1,000분의 5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○ 검토결과,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여겨짐.

○ 참고적으로 조례개정 사항이 도세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함.

붙 임 :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